

의안번호	제 호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

의결사항	
------	--

특별회계 존속기한 일괄 연장을 위한 고성군 청사건립  
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고 성 군 수
제출연월일	2023. 10. 6.

# 특별회계 존속기한 일괄 연장을 위한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호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: 2023. 10. 6.

제 출 자: 고 성 군 수

## 1. 개정이유

- 가.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
- 나.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등 8건의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으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및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(현행)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- (개정)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재정법」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
- 성별영향평가(복지지원과): 특이사항 없음[복지지원과 28794(2023. 7. 24.)]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3-1379호

가) 예고기간: 2023. 8. 28. ~ 2023. 9. 18.(21일간)

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2) 부서 사전협의

-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4항에 따라 고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 
심의 완료(원안가결)[기획예산담당관-13025(2023. 8. 25.)]

3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4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5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
6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4. 본문: 붙임과 같음

**특별회계 존속기한 일괄 연장을 위한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**

**제1조(「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」의 개정)**  
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 중 “2023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**제2조(「고성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**  
고성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 중 “2023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**제3조(「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**  
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 중 “2023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**제4조(「고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**  
고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3조의2 중 “2023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**제5조(「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**  
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

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 중 “2023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**제6조(「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**

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 중 “2023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**제7조(「고성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**

고성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 중 “2023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**제8조(「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**

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 제2401호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특별회계의 존속기한)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### 제1조(「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4조의2(존속기한)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<u>2023년 12월 31일</u> 까지로 한다.	제4조의2(존속기한) ----- ----- ----- <u>2028년 12월 31일</u> ----- -----.

### 제2조(「고성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5조의2(특별회계의 존속기한)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<u>2023년 12월 31일</u> 까지로 한다.	제5조의2(특별회계의 존속기한) - ----- ----- <u>2028년 12월 31일</u> -----.

### 제3조(「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4조의2(존속기한)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<u>2023년 12월 31일</u> 까지로 한다.	제4조의2(존속기한) ----- ----- ----- <u>2028년 12월 31일</u> ----- -----.

### 제4조(「고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3조의2(특별회계의 존속기한)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에 따라	제3조의2(특별회계의 존속기한) - -----

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<u>2023년 12월 31일</u> 까지로 한다.	----- <u>2028년 1월 31일</u> -----.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제5조(「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2조의2(존속기한)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에 따라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<u>2023년 12월 31일</u> 까지로 한다.	제2조의2(존속기한) ----- ----- <u>2028년 12월 31일</u> -----.

제6조(「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4조의2(특별회계의 존속기한)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<u>2023년 12월 31일</u> 까지로 한다.	제4조의2(특별회계의 존속기한) ----- ----- <u>2028년 1월 31일</u> -----.

제7조(「고성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4조의2(특별회계의 존속기한)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<u>2023년 12월 31일</u> 까지로 한다.	제4조의2(특별회계의 존속기한) ----- ----- <u>2028년 1월 31일</u> -----.

제8조(「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

현행	개정안
<p>고성군조례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</p> <p><u>제3조(유효기한)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</u></p>	<p>고성군조례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</p> <p><u>제3조(특별회계의 존속기한)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</u></p>



특별회계 존속기한 일괄 연장을 위한 고성군 청사건립  
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제2호  
-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 
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 
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.

작성자: 기획예산담당관 장 찬 호

**□ 지방재정법**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 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목적세에 따른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.....